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 초빙 공고

전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복지증진의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감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 상임감사 1명 (임기 2년,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2. 주요 담당 업무

-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 총괄

[공단 주요 업무]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 가입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영
-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3. 자격요건

-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

[상임감사 자격 요건]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국민연금 분야에 대한 높은 업무 이해도를 갖춘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

— [상임감사 자격 요건] —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 1, 2.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결격사유는 2026. 10. 22. 법 시행 예정(결격사유에 적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분

4.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감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자격요건 증빙자료 포함) 각 1부
- ※ [첨부] 지원자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최종 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포함) 및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기관 현황, 자격·면허증 사본,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해당자에 한함)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9. 3.(목) ~ 9. 17.(목)
- 접 수 처 :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7층, 인사혁신실)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이메일(npsshr@nps.or.kr), 방문(대리접수 가능) 중 택일
- ※ 모든 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토요일·공휴일 제외
- ※ 이메일로 접수한 경우, 추후 안내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전문성 및 직위 적합성 심사
- 직무수행 계획이 공단의 발전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직무 관련 경력의 연계성과 직무 수행능력 심사
- 윤리의식 및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심사
-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인사검증(임용후보자)

- 임용후보자의 임용구비서류,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확인한 결과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 취소
- ※ 인사검증 관련 필요 구비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

7. 기타사항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npshr@nps.or.kr) 또는 ☎ 063-713-5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